

새터 반성폭력 내규 단위 교양과 논의를 위한 지침

이 지침은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교양과 논의를 각 단위에서 진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경험이 없는 단위에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논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지, 교양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할 지 난감할 것이라 예상되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지침은 함께 드린 교양자료로 교양을 진행할 때나 단위에서 새터 내규 시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침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우선 성폭력의 개념을 교양할 때 어떠한 지점이 강조되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하는지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드린 교양자료에 있는 '성폭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제하시거나 공유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지,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느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서술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성폭력 개념을 이야기할 때나 새터 기간의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를 공유할 때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해야 할 지 적어보았습니다. 넷째로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관한 단위 교양을 실시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 말고도 각 단위에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터 기간에 새터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점이 주지되어야 할 지, 단대 혹은 과/반 학생회에서 새터 내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단대 혹은 과/반 학생회 차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유의할 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이 성폭력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떤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을 참고하셔서 단위에서 교양과 논의를 진행하실 때 '어떤 틀로 어떤 내용을 짚으면서' 진행해야 할 지 감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로 단위 교양 주체나 학생회 일꾼들이 주로 이 지침을 숙지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지만 교양자료의 일종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1.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꼭 필요하다.

- 흔히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등)만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 흔히 '친분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언어 등도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공유해야 함
-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상대방(특히 여성)이 자신이 불쾌하고 불편한 경우라도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애매하게) 표현하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그것을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학우들이 뭐 하나 할 때마다 여성에게 괜찮겠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냐고, 그러면 너무 서먹서먹해지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할텐데, 정말 즐거운 새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경우 상대방에게 가볍게 물어보는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2. 성폭력은 우리 일상의 성폭력적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며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꼭 합의해야 한다. 특히 새터 때 발생하는 성폭력은 우리의 놀이문화, 공동체문화, 술자리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3.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이 성폭력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은 많은 경우 증인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며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여부는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해자 주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지나치게 민감하게 구는 것 아니냐' 등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만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4.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그러한 문제제기가 귀찮은 것이라거나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피해자의 상황 이해하기 → 주변인으로서 피해자 도와주기

1.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 1) 흥겹게 놀아야 하는 분위기를 자신이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2) 성폭력은 대부분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가 어색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3) 새내기가 선배에게 성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새터 시기 처음 만난 선배에게 문제제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 새터 때 새내기들의 대부분은 선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

2.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혹시 내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 것이 아닐까’, ‘왜 그 때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등-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일뿐이다. 성폭력이 일어난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폭력이 피해자의 탓이 절대 아님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보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 위와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선배나 동기가 사건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를 다그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피해자이다. ‘그런 일은 별 거 아니지 않아?’, ‘뭘 신고까지 하니?’ 등의 이야기는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

5. 사건이 신고되면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6.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며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택지들을 이야기해준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1. 단순히 성폭력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문제제기하고 우리 스스로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시도이다.

- 성폭력이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공동체 문화의 문제임을 인식한다면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목적 역시 단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그칠 수 없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진정한 목표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계기로 하여 공동체 내의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인 성문화를 성찰해보고 새로운 성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잘 이해되도록 하여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상명하달식의 규제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자치 규약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2.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성폭력 개념 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사례들은 ‘이러한 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맥락이며 피해자의 느낌과 경험이다.

3. 새터 이후의 사건 해결도 중요하지만 새터 기간의 성폭력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 예시

1. 최소한 OT기간과 수련회 초반에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OT와 수련회 첫날 단대 학우들이 다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간단한 소개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주로 말해야 할 것은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있다는 것,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 성폭력 사건의 신고통로 등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할 자치규약이며 예방을 주목적으로 함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새터 기간을 보내자는 당부의 말 정도를 해 주는 것도 좋다.

2. 각자의 성폭력에 대한 생각 알아보기

-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자리에서 교양프로그램의 도입부에 하면 좋은 아이템이다. 우선 종이를 나눠주고 ‘성폭력 하면 떠오르는 것’ 혹은 ‘무엇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쓰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섞은 후 하나씩 뽑도록 하고 뽑은 것을 읽도록 한다. 그 후에는 읽은 것을 쓴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 들어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해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 직·간접적인 성폭력의 경험나누기와 그 대처방안 이야기해보기

- 자신이 겪은 성폭력적인 경험이나 성폭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목격한 것이나 매체 등에서 접한 것), 주위 사람들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본다. 이 때 구성원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 공동체의 성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성폭력의 경험을 나눈 뒤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본다.

4. 새터 반성폭력 내규 재구성해보기

-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교양이 이루어진 뒤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내기들보다는 선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정에 맞게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법조문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다면 이 때 만들게 되는 자치규약은 ‘이러한 것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와 같은 형식의 10개

이내의 항목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치규약을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본다는 의의를 살리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새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실제로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

1. 성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학생회장, 집행부, 선배 기획단들이 그때마다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그것이 강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 상황이 왜 성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2. 새터 시기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과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

예) “어디어디에 신고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반 학생회장이나 XX대 주체 이 분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000호로 오시면 됩니다.” 등

3. 성폭력 사건이 신고됐을 경우 최대한 친분이 있는 동성의 선배나 동기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라는 것은 꼭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신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새터 시기 성폭력 사건은 신고함이나 단대 학생회로 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로 친한 선배나 친한 동기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과반 학생회 정도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단대 학생회까지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과반 학생회에서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과반 학생회에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과반 학생회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사건을 해결하기로 맡은 사람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최선이며, 대책위원회가 꾸러지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혹은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 사이 관계가 친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넘어가자’ 류(類)의 말로 사건을 덮어두자고 하는 것은 금물! 그런 식의 해결은 해결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이후에 또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5. 사건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순서

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일반적으로 ‘XX 비상대책위원회(준)’-을 꾸린다. 주로 학생회가 될 수 있겠지만, 학생회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담당하는 주체 한 명과(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르다면 각 소속 학생회에서 각각 한 사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정도로 꾸리는 것이 좋다. 이 때 가해자가 속한 학생회에서 대책위 에 참여하는 것은 가해자를 두둔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로서 책임을 사건 해결에서 그 후속작업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① 피해자에게 대책위가 어떤 어떤 구성원으로 꾸려지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지 충분히 설명해준다. 언제든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② 피해자의 진술서를 받는다. 비대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참고인 진술을 받거나, 피해자의 보충 진술을 받을 수도 있다.

③ 가해자의 진술서를 받는다.

④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면 좋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기록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확인 서명을 받아놓는 것도 좋다.

⑤ 사실 확인이 되면 비대위에서는 사건 규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경과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사건 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준)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된다.

⑥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을 받는다. 그리고 비대위 내부에서 요구안이 알맞은지 검토한다.

⑦ 요구안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⑧ 가해자가 요구사항을 하는지 비대위는 책임 있게 확인한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총여학생회에 연락을 할 수 있다.

6. 한편 과/반학생회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사실 그 피해자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경우라도 학우들과 함께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의 가해가 이루어지기 쉽다.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역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 가능하다.

사건이 해결이 된 이후 사건 해결 과정을 그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기본(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나 간단한 세미나, 관련 영상물 보기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성원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의 성폭력도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 여기서 잠깐! → 2차, 3차 성폭력이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가해자에 의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루어지는 폭력을 가리킨다. 피해자에게 사건을 조용히 잊으라고 강요한다거나,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경우 혹은 신고할 경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언사는 모두 2, 3차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 '그걸 가지고 성폭력이라고 하다니, 이상한 애다.' 등의 언사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성폭력 경험을 남성중심적인 성담론에 기대어 부정하거나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 또한 이런 언행은 이후 똑같은 성폭력 행위들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7. 과/반 학생회에서 나름대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처리과정을 단대 학생회로 보고하도록 하자. 그래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대 학생회도 마찬가지다. 단대 학생회로 보고되는 사건 개요와 사건처리과정, 그리고 단대 학생회에서 직접 처리한 사건 개요와 사건처리과정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총여학생회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새터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경험의 축적과 이후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8. 사건 해결을 할 때 피해자의 의지와 의사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건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해줘야 하고, 최대한 사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신고하고 나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공식적으로 대책위를 세워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공식적 해결은 공개적 해결과는 다르다)은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절대 사건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다- 사건이 묻혀지거나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다른 가해를 할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고, 뒷소문만 무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